



##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황현아 연구위원

- 20대 국회에서는 상법 보험편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발의된 10건의 개정안은 (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ii) 고지의무 수동화, (iii)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 동의에 전자서명 포함, (iv)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약관 허용, (v)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금 감액 청구 허용 등에 관한 것임
  - 위 (iii)항 관련 개정안(법사위 대안)은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지의무 수동화는, 외국의 입법례 및 학계 논의 대부분이 고지의무 수동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방향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수반하여 질문표 작성의 원칙 및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허용 문제는, ‘피보험자 및 그 유족 보호’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 형량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특별위험 감소는 특별위험의 소멸과 달리 평가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특별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금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소 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변화된 보험계약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쟁점(소멸시효, 음주·무면허 면책)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1. 검토배경



### ■ 최근 상법 보험편 개정 논의가 국회 및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상법 보험편은 비교적 최근인 2014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개정 후에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문제 등이 제기되며 추가적인 개정 요구가 있었음
- 20대 국회에서는 총 10건의 상법 보험편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상법 보험편 개정 방향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국회 및 학계에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본고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개관하고, 국회, 정부, 학계 및 보험업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 2.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보험편 개정안



###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4가지 분야로 분류해 볼 수 있음<sup>1)</sup>

- 첫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으로(상법 제662조), (i)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소멸시효 기간 연장) 및 (ii) 보험회사 측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안(소멸시효 중단·정지)이 제안됨
- 둘째,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상법 제651조), 현행 규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능동적·적극적 고지의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질문표 등을 통해 물어본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방안을 제안함(고지의무의 수동화)
- 셋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상법 제731조),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개정안은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명시적

1)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음

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도입)<sup>2)</sup>

- 넷째, 생명보험 중과실 면책 규정(상법 제732조의2)을 개정하여,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됨
- 다섯째, 현재 특별위험 소멸 시 보험료 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상법 제647조)을 개정하여,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청구 허용 방안이 제안됨

## ■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법학회는 2017년 9월 8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제안하며”라는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 및 학계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음
- 동 학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위 다섯 가지 쟁점 외에도, (i) 설명의무 이행 시기를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으로 개정하고, 설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등 설명의무 관련 법제 정비 방안,<sup>3)</sup> (ii) 보험계약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방안,<sup>4)</sup> (iii)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문제,<sup>5)</sup> (iv) 상법 제655조(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를 둘러싼 해석상 문제점 해소 방안,<sup>6)</sup> (v) 보험모집보조자 관련 상법 조항 정비 방안<sup>7)</sup>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논의되었음

2)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서면동의의 관련 개정안은, 이용주 의원 안(의안번호 3580)과 윤상직 의원 안(의안번호 4641)을 통합·조정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안번호 9697)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i)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ii)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음(제731조제1항, 안 제735조의3 제3항)

3) 김은경, 「보험계약법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2017년 한국금융법학회 특별 학술대회 자료집』, p. 71 이하

4) 김은경, 「보험계약법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전계 자료집, p. 87 이하

5) 박세민, 「개정을 고려할 만한 보험계약법 조문」, 전계 자료집, p. 121 이하

6) 박세민, 「개정을 고려할 만한 보험계약법 조문」, 전계 자료집, p. 124 이하

7) 유주선, 「상법 보험편 보험모집보조자(대리, 중개 등), 보증보험 및 손해사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전계 자료집, p. 133 이하

### 3. 쟁점별 논의 진행 상황



#### 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및 시효 중단·정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었음<sup>8)</sup>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문제는 일반적인 소멸시효 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관련 민법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법무부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개선<sup>9)</sup>을 추진 중임
-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그 발생 여부가 외견상 명확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의 조사 및 지급 결정 절차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회사의 지급 결정 시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 보험금청구권만의 독특한 특성도 있음
-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일 보험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i)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그 지급 여부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할 때 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ii) 보험금 청구권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민사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나. 고지의무 수동화

■ 고지의무 수동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영국 등에서는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였음

<sup>8)</sup>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금융법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도 독립 주제로 다루어지며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었음(박은경,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전개 자료집, p. 43)

<sup>9)</sup>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법개정안의 소멸시효 제도는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되, 기산점에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며, 시효장애사유를 3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표 1〉 주요국의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령 현황

국가	관련 조항	주요 내용
프랑스	보험법 L.113-2조 2항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 특히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자신이 인수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손실 보고서 형식(the loss reporting form)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자가 합의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일본	보험법 제4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에 의해 부보되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보험자가 고지를 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영국	소비자보험법 <sup>10)</sup> 제2조	계약 또는 변경 전 고지 및 진술 (1) 생략 (2) 소비자는 보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소비자가 기존 정보에 대한 보험자의 확인 또는 수정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이는 본 법상 잘못된 정보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 (4) 본 법 적용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비자의 보험자에 대한 고지 및 진술과 관련된 의무는 위 (2)항으로 대체된다 (5) 따라서, (a) 소비자 보험 계약의 최대 선의성은 본 법의 위 규정의 범위에서 수정되고, (b) 1906년 해상보험법 제17조의 적용(해상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은, 그 해상보험계약이 소비자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본 법의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

-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수동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및 고지대상이 점점 복잡하고 특수해 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문가인 보험자가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질문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고지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보험자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sup>11)</sup>
- 또한 법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sup>12)</sup>

<sup>10)</sup>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sup>11)</sup> 맹수석, 「보험계약 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전계자료집, p. 14

<sup>12)</sup>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11.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상법 보험편 개정 시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의가 되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음

-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해서는 (i) 고지의무의 대상을 축소, 제한함으로써 계약상 중요한 사항 중 보험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ii) 보험회사가 질문표에 필요한 모든 질문을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지의무가 완화되는 효과만 초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 그러나, (i)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여 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ii)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없이 모두 답변한 보험계약자는 더 이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질문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일 것임

- 중요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질문표에 추가하여 질문표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거나 포괄적이 되는 경우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중요성 판단을 보험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고지의무 수동화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sup>13)</sup>
- 따라서, 고지의무 수동화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질문표 작성의 원칙 및 세부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한편, 보험회사도 질문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고지의무 수동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고지의무의 지나친 완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다.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 현재 보험계약 체결 과정이 대부분 전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는 유독 서면(종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의 불편이 있음

- 개정안(이용주 의원 안, 윤상직 의원 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sup>13)</sup> 맹수석, 전계 자료집, p. 6(동 저자는 고지의무를 수동화할 경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의2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 학계에서는 대체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프라인의 서면(종이)에 의한 서명만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거래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견해,<sup>14)</sup> 전자문서, 전자 서명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정보통신시대의 보험거래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다만 위·변조 방지 등 보완책을 위해 전자문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sup>15)</sup>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구체적 보완책으로서, 피보험자의 동의 의사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을 통해 표시되어야 하며, 대리서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전자자필서명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령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번호 확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생체 인식기술의 활용도 고려할 것을 제안함<sup>16)</sup>

## ■ 일반적으로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고, 따라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도 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동의라고 볼 수 있으나,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허용 여부를 명문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타인의 생명보험을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만 있다면 굳이 전통적인 종이 서류에 의한 동의 방식만을 고집할 실익은 없음
- 따라서, 이용주 의원 안 및 윤상직 의원 안과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2017년 9월 28일 위 두 법안을 반영한 법사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라. 음주·무면허 운전 시 생명 및 상해보험 면책

### ■ 사망 및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의 중과실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

- 본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14) 전우현, 전계 학술대회자료집, p. 119

15) 박세민, 전계 학술대회자료집, p. 129

16) 박세민, 전계 학술대회자료집, p. 130

원칙이나, 사망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중과실 보험사고 시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함<sup>17)</sup>

- 이는 1991년 상법 개정 시 도입된 조항으로, 통상 고의-중과실-경과실 등은 주관적인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및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것임
- 개정안(주승용 의원 안, 의안번호 2360)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사망 및 상해보험에서의 중과실 부책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대법원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이유로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음<sup>18)</sup>
- 이에 관하여 보험 학계에서는 대체로 음주·무면허 운전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함<sup>19)</sup>
  -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면책사유는 인정되며,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면책 사유 인정이 필요함<sup>20)21)</sup>
  - 개별 피보험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나 일반예방도 중요하며, 피보험자에 어떠한 비난가능성도 없는 선천적 기왕증도 보험금을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피보험자의 의도적 잘못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전혀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면책 내지 감액을 허용할 필요 있음<sup>22)</sup>

■ 음주·무면허 운전 면책 여부는 피보험자 및 그 유족 보호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임

17)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2조의2는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됨

1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19)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p. 526

20)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p. 464

21)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p. 873

22)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p. 774

- 유족 보호를 위해 상법 제732조의2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적어도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거나 적어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문제는 논리 필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므로, 음주·무면허 운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음주·무면허 운전 당사자 및 유족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마.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청구 허용

- 보험계약자는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위험이란 보험단체에 속하는 다른 계약자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요인이 특별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짐<sup>23)</sup>
  - EU 및 일본에서는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기존에 학계에서도 특별위험이 소멸했을 때뿐 아니라 감소했을 때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sup>24)</sup>
  - 다만, 특별위험의 소멸(예컨대, 군복무→제대)과 달리 감소(예컨대, 군복무 중 보직 이동)는 평가적 요소가 더 크게 개입되므로, 특별위험이 실제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4. 결어



- 이상과 같은 상법 보험편 개정 논의는 (i)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ii)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가 있음

<sup>23)</sup> 통상 특별위험의 예로는 군복무, 외근업무 종사 등을 들 수 있으며, 민원회신 사례 중에는 ‘운전자 연령을 21세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운전자 연령이 23세가 된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 21세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므로 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는 바, 보험의 유형에 따라서는 ‘낮은 연령’도 특별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nMenuCode=51&gSiteCode=2&PCSDID=PC00046869&mPart=&impbcd=&impmcd=&impscd=&query=&startCount=7050>)

<sup>24)</sup>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p. 333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제도 개선, 고지의무 수동화,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료 감액 청구 허용 등 관련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도입의 허용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허용 문제 등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상법 개정 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kiri**

〈별첨〉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보험편 개정안

의안 번호	대표 발의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017	주승용	제662조 (소멸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및 (ii)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li> <li>중단된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새로 진행함</li> </ul>
2360	주승용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li> </ul>
3580	이용주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서면에 의한 동의’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시킴</li> </ul>
4641	윤상직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서면에 의한 동의’에 본인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시킴</li> </ul>
4888	정재호	제662조 (소멸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3년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li> </ul>
5111	김해영	제662조 (소멸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3년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li> <li>보험회사 측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함</li> </ul>
5406	민병두	제662조 (소멸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3년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li> <li>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 발생을 알았을 때 또는 중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함</li> <li>보험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보험자의 결정이 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됨</li> </ul>
6182	민병두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특별위험 소멸 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li> <li>보험회사는 감액청구를 거절할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을 하여야 함</li> </ul>
7053	정운천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질문표 기재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고지하면 추가적인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수동화함</li> </ul>
7357	박범계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질문표 기재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고지하면 추가적인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수동화함</li> </ul>

\* 이용주 의원 안, 윤상직 의원 안은 대안반영 폐기